通信情報保護學會誌
第7卷 第4號, 1997. 12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 Korea

배 대 헌*

Ⅰ. 서 언

1940년대에 개발되었던 컴퓨터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계산기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컴퓨터는 자료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저장하여 조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편집함으로써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계산기능 외에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활용과 더불어 컴퓨터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통신매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여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함으로써 통신망의 접속, 이용을 촉진케 하여 정보화사회를 이끌어내는 사회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내용(contents)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매체의 속도도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통신망의 고속화 추진은 유용한 정보의 확보와 함께 정보화사회를 이끌어내는 주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정보를 나르는 매체의 속도와 직접 관계되어 있다.[1] 세계 각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 infobahn)을 구축하여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우선 고속화된 정보전달의 통신수단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디지틀 혁명(digital revolution)에 힘입어 종래 상상에 그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현실에서 활용하게 하는 소위 '가상공간'(cyberspace)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이 가상공간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형성, 발전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시간·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출발되었던 것이지만, 활용범위는 인간생활의 전영역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영상회의, 행정·교육서비스의 제공, 상업적 이용인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술발전에 힘입은 것이지만, 인간의 사회활동과

*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본 연구는 1996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방안이 마련될 때에 사회에 비로소 안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산업사회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법·제도의 틀 속에 끼워 운용될 때에는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법학자인 Katsh 교수는 "디지틀 세계에 있어서의 법"에서 정보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신뢰성, 하이퍼텍스트의 송수신과 법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계약체결 등장, 저작권법의 변화 및 프라이버시권 등에 관하여 컴퓨터상 디지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견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2]

이 연구는 광범위한 규범적 논의 중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서 드러내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다루는 논의는 법정책적으로 사적 재산권의 보호정책(protection policy)과 공유(sharing policy: public domain)라는 입법정책적 분석이 규범에 어떻게 투영되느냐를 검토하는 현실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를 둘러싼 사용자와 공급자측의 경제적인 측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체제에서 국내 정보이용자와 외국 공급자간의 마찰을 적절히 해결해야 할 통상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결국 자국의 정보내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이끌어내는 현실문제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2장에서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현황을 개관한 후, 제3장에서 망구축의 기본적인 논의인 호환성(interoperability)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제4-5장에서는 인터넷상이라는 정보전달의 매체로 이용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도메인이름(domain name)·상표권보호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망구축과 이용과 함께 불가결한 요소로 파악되는 보안성(security)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Ⅱ.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현황

1.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기반구축의 개념

초고속통신망이란 고속·대용량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선로가 설비설치된 정보통신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은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체계적인 응용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에서 무리없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구축의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구축이란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제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의 조성을 말한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망을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및 대학 기업 가정을 연결하는 100 Gbps급의 광전송망을 3단계로 나눠 초고속통신망과 관련기기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10년까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광대역공중통신망을 근간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종래의 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망으로써 밀려드는 정보화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의 새로운 혁명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종래에는 음성과 문자만의 정보전달에 한정되었지만, 디지틀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멀티미디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광대역의 고속통신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과 함께 세계를 새롭게 묶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의 이용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인류에게 미증유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에서 정보기본법이라 함) 제2조에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3]

이러한 규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이 완성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4] 이러한 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논의는 망 자체의 설치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연동성에 관하여 살펴보게 된다.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다. 전자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용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기반을 조성하자는데 그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후자에 있어서는 산업체, 일반 가정 등의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이용자간의 통신방식이 광대역화, 쌍방향화, 디지틀화함으로써 일반 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2.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현황[5]

정보통신망은 고도 정보사회를 주도할 국가기반 구조로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부상되고, 정보유통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복지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국부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유통이 중시되는 지식집약적 경제구조하에서는 국가정보기반구조의 수준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21세기에는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이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i)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 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구축, ii) 초고속, 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해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iii) 공공기관, 주요기업 등 선도그룹간의 정보교류로 기술개발능력 제고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iv)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재택 근무등 인간중심의 정보화사회 실현, v)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향후 최대 성장 유망산업이 될 멀티미디어 정보 산업의 육성으로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단계별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6] 대도시간에 먼저 구축한 후 중소도시까지 망접속점을 설치하여 확대하며, 통신망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망간연동, 다른 기종간의 접속이 가능한 개발형구조로,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산환경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통신망의 구성은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간과 거점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전송속도를 차등화하고, 가입자가 쉽게 액세스 할 수

있게 하여 속도를 1단계(1995-1997)에는 주요 거점도시간을 622Mbps, 거점도시와 중소도시는 45-155Mbps, 가입접속은 1.5Mbps급까지 지원하게 한다. 2단계(1998-2002년)에는 주요 거점도시간 속도를 2.5Gbps로 3단계(2003-2010년)에는 주요 거점도시간 속도를 수십 Gbps로 단계별로 속도를 증속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단순히 통신망의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형구조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적용시켜야 하며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까지의 전산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별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충족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측 액세스 속도를 점차 확대, 고속화시켜야 하며 안전성, 신뢰성 차원의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현황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이란 일반 국민에게 음성, 문자, 영상 등을 비롯하여 영화, 쇼핑,게임 및 VOD 서비스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투자하여 구축하는 정보통신망이다. 2010년까지 산업체, 일반가정 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일반 가입자 가정까지도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7] 제1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 전송시설의 디지틀화 확대와 시내 전화국간에 155-622 Mbps급 전송망을 구축하며 가입자에게는 2 Mbps급으로 영상회의·정지영상 전화서비스·고속고화질 팩스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단계는 확산단계로 중소기업·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광대역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단계는 완성단계로서 일반거주지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결짓고 서비스이용을 확대한다.

초고속공중정보통망의 구축은 2010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총투자재원 약 32조원 중 88%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축된 기반은 일반국민과 산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유로운 접근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불가결의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이 초고속관련 각종 단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의 완화, 선도적 시험환경제공을 통한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첨단 정보의 교류와 인력개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선정방법에 경쟁원리 도입 등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수요 촉진, 일반인에 대하여 정보화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세부추진내용으로 현재의 수요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요를 추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나 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망의 구축과는 달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관련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 정보통신망의 구축 사업의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 확대, ii) 국제전송로의 다원화 및 고속화 추진, iii) 초고속망사업자의 조기 승인, iv) 가입자망의 초고속화 추진, v)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상호진입 허용 등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비설치를 근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도 정보사회

를 만들어간다. 이에 관한 정보통신산업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제공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이다. 전자는 전산망 보급의 확산과 이용촉진과 함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유산자(information-haves)와 무산자(not-haves)의 계층을 해소한다. 후자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로 간접적으로 정보화촉진을 뒷받침한다.

Ⅲ. 통신망 구축에 따른 호환성과 지적재산권

1. 서 언

호환성(interoperability)이란 상이한 시스템간 상호연결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말한다.[8]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개별 시스템의 단독적인 운용에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스템간의 상호접속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다. 개별 서비스·네트워크의 인테페이스의 확보, 서비스·서비스간의 상호연결 및 네트워크·네트워크간의 접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신망상 호환성이 확보되면 이러한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용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환성은 상이한 시스템 사이의 상호접속 또는 연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상이한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란[9] 복수의 기기를 연결, 작동시키기 위하여 정보의 신호, 배열 등을 연계하도록 설계된 규격 또는 규약을 뜻한다. 즉 이는 컴퓨터상 하드웨어·하드웨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또는 사람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예컨대, 컴퓨터와 프린터를 접속할 경우에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프린터를 통하여 자료를 인쇄할 수 없게 된다. 컴퓨터통신의 경우에 Windows 95에서 사용하는 TCP/IP도[10] 이러한 규약의 하나로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라고 규정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1]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정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호환성을 확보하려는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다.[12]

여기에서 논의하는 호환성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프로그램 내용을 그 대상이다. 어떤 프로그램(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상호간 접속하여 얻어진 결과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프로그램 및 운용프로그램간의 호환성·연동성의 확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을 확대시켜 이의 발전과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NII 보고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관하여 관련단체는 호환성의 확보를 NII 구축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13]

2. 호환성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망구축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저작권에 의한 보호 또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이 아니라, 당해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프로그램을 분해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14] 즉 이는 타인의 프로그램을 분해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자의 권리범위를 제한함으로써(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하여) 허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1) 호환성 확보와 프로그램 분해 (decompilation; reverse engineering)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읽거나,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읽는 경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내용을 파악하는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의 프로그램 자체에 담겨진 내용을 읽어 그 구성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판되는 소프트웨어는 0과 1의 조합인 기계어 형태의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해 프로그램을 복재하여 오브젝트코드로 구성된 내용을 소스코드(source code)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프로그램의 분해 또는 분석(decompilation)이라고 부른다.[15] 전문 프로그래머는 분해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지고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호환성 있는(또는 경쟁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분해에 관한 법적 보호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적잖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법적 보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의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제6조에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i)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ii) 이전에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iii)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일부에 제한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프로그램을 분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 그러나 이 지침은 호환성 확보 외에 다른 목적을 꾀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넘겨주기 위한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생산·시판하기 위하여 이용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7]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점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18] 판결을 들 수 있다. 이들 판결은 비디오게임시장의 사실상 표준적 지위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비디오게임 시스템과 호환성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당해 게임시스템의 작동 프로그램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분석한 경우에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사용의 법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분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들 판결내용이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NII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호환성은 NII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20]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1]

여기에서 Sega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ga Enterprise는 세계적인 게임프로그램 회사로서 카트리지와 게임기를 생산하였다.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개발자인 Accolade사는 Sega 게임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프로그램분해를 통하여 Sega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카트리지를 생산하였다. 이에 Sega Enterprise는 Accolade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를 이유로 소제기하였으나, 피고는 Sega 카트리지에 대한 비침해의 '호환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여 Seg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프로그램을 분해할 목적으로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은 코드에 담겨있는 기능성(functional concept)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고안(idea)을 분석한 것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정사용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은 공정사용법리[22]의 범위의 적용에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성파악에 주안점을 두어 주로 "저작물의 성격"의 판단에 초점을 모았다. Sega 비디오게임은 복제·분해될 수 있는 대상(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게임에 관하여 전통적인 어문저작물 보다 보호정도를 낮출 수 있었다. 또한, 만약 피고의 프로그램의 분석을 불법행위로 판단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기능적 측면에 관하여도 사실상 독점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3] 여기에서 기능적 측면 또는 고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24]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일정한 범위내의 프로그램의 분석은 결국 대상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25]

그런데 호환성이 확대되면 종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내용이 당업계에 일반화된 공지공용의 기술로 인정됨으로써(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창작성의 결여로) 개발자는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관한 반사적 이익은 소비자측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기술개발로 얻어진 결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할 때 개발자는 독점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환성 확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문제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2) 호환성과 표준화의 문제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간 상호접속과 연동성을 꾀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26] 표준화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의 기준에 묶음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통일성을 가져와 서비스이용자의 혼란을 막아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즉 네트워크간의 상호접속과 서비스·응용프로그램간의 호환성은 통신망의 개방체제 개념과 연결되어 표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사설표준화기관, 생산업체간의 콘소시움 및 개별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의 통신기준(ETC)은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ISO, IEC, ITU 등의 기관에 의하여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속통신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연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7]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간의 주된 논의는 어떤 특허내용이 표준화의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 특허권자가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회수되지 못하는 이용허락계약(license agreement)의 체결을 기피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느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기도 한다. 즉 호환성의 확대인 표준화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보급확대와 이용촉진을 꾀하는 반면에, 개발자에게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

적 수익획득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역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위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되지만, 계약형태로로 강제적 이용허락계약(compulsory license)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28] 지적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때에 향상된 기술내용이 표준화의 대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표준화의 주체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의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이 급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표준화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은 기술혁신에 위험을 야기할만한 급박한 사정에 처한 경우 외에 거래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우리의 현실과 해결방안모색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공청회의 논의에서 프로그램의 분해에관한 법률규정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거부되어 입법론적 방법을 피하고 사법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역공정 또는 프로그램의 분해를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입법론이 재기되고 있다.[29] 그러나 입법적 해결방안 보다 해석론에 따른 사법적 해결방안을 통하여 개별적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가진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돌아볼 때 프로그램의 분해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한다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생산이라는 외관을 가진 채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할 것이라는 점이 추단된다. 비록 입법론에 따른 허용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사안의 법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역공정 또는 프로그램의 분해와 관련된 통상문제이다. 미국을 비롯한 정보산업선진국은 자국의 정보산업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상정책의 중점과제로 정하고 있다. 명문규정으로 이를 허용하게 될 때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30]

이러한 각국의 표준화작업은 또 다른 비관세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개방적 시스템과 표준화의 확대는 통신망이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국내의 통신망의 이용에 전용되는 표준화된 제품 또는 기술이 국내의 표준화에 한정될 때 외국의 제품이나 기술은 국내 통신망상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점은 역으로 우리의 제품이나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통상문제를 둘러싼 비관세무역장벽의 결과를 가져온다.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는 선진 기술수준간의 차이가 점차 극복됨에 따라 세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Ⅳ. 통신망 이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범위

1.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정리된 자료철로서 데이터의 일목요연한 집합물이다. 이는 어떤 응용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 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헌·신문기사·특허·판례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사회·경제(주식시세 등)·산업통계 등의 수치정보를 갖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31]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편집함에 있어서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을 가

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편집저작물의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의 객체는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데이터의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을 말한다. 따라서 유용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선택 또는 배열에 구성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현행 법규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의 보호 밖에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특별법적 보호방안(sui generis protection)을 두어 보호하여야 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다.

2.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저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하나는 상업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경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단체, 공공도서관 및 과학기술개발자들이 논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는 문화적 측면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이용케 하는 공급자측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수요자측 사이의 갈등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점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는 자료의 조사, 가공, 데이터의 입력 및 제공형태의 개발을 위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투하된 엄청난 자본을 회수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료를 추가갱신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선보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이용자로부터 확보하려는데 있다. 반면에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제공자)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주고 가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때로는 공개된 자료의 무임편승을 요구하며) 이용과 그 편의를 제공받아 사회·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어진 단순한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바꾸어내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대상을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때때로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자신의 경제적 수익확보를 문화적 가치실현에 양보하여 지적재산권의 특성인 시장지배력을 구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 볼 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규범의 틀을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종래의 저작권의 보호객체와 상이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안과,[3] 종래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데이터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하자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저작권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적 보호범위를 대단히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첫째 방안에 따르고 있는 것이 EU Database 지침이다. EU 지침 제1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전자적 매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계적 또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된 독립된 저작물, 데이터 및 기타 자료 등의 집합물이라고 규정하였다.[4]

둘째 방안은 미국, 일본 및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정, 정리 또는 배열하여 얻어진 저작물 전체가 원저작물이 된다. 편집물이란 집합저작물을 포함한다.[5] 일본 저작권법 제12조는 ① 편집물(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함)에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따라 창작성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

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35] 한편, 최근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종래의 문언적 저작물과는 다른 법리를 좇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규정을 설치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36]

최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독자적인 보호법을 마련하거나 저작권법에 편집저작물 규정을 두어 보호코자 하는 두 가지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전자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중심으로 효용성과 체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규범근거인 독창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Feist 사례와[37] ProCD 사례를[38] 검토함으로써 논의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Feist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ural Telephone사는 켄사스 주의 일부 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회사로서 가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인명편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Feist사 역시 전화번호부를 발간키 위하여 Rural Telephone사에 대하여 가입자의 명단을 발췌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Feist사는 Rural Telephone사의 허락 없이 약 1,300 여명의 명단을 발췌하여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이에 Rural Telephone사는 자사의 전화번호부를 발췌복사한 Feist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제기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Feist사에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사실심의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판단근거로서 전화번호의 수집에 쏟은 노력과 자본만으로 편집저작물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알파벳순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하여 편집한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39]

다음의 ProCD판결은 컴퓨터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Feist 사례의 판시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ProCD사는 3,000 여종의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SelectPhone이라는 이름으로 CD Rom를 시판하였고, 이를 구입한 Zeidenberg는 제품 속의 데이터인 전화번호를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인터넷에 이를 공개하였고, ProCD사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ProCD사는 Zeidenberg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ProCD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피고가 이 DBMS에 해당하는 검색프로그램을 복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을 복사한 것이므로 이전 판결인 Feist 판결을 좇아 피고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두 판결은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느냐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종래 저작권의 인정에 있어서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던 '노고의 가치'(sweat of the brow)[40]라는 판단기준 대신에 독창성이 주된 판단근거로 자리잡게 된 것이며, 또 하나는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1]

3. 우리의 보호방안 모색

우리 저작권법 제6조 1항은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였고, 2항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

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일별하면, 편집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42] 따라서 편집저작물이 저작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편집물을 전체로 이용하여야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그 내용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43]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미국의 Feist판결의 내용과 같이 데이터의 독창적인 선택이나 독창적인 배열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편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배열이 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양자 가운데에서 무엇이 논의의 실질적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다. 예컨대, 알파벳순과 같은 배열기준에 따라 변호사 이름을 편집한 내용에 대하여는 편집물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변호사 사무실의 크기와 참고서적 등에 따라 데이터를 배열한다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의 용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편집물상 독창성 인정 여부는 자료 또는 데이터의 배열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사항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44]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선택이나 배열에 독창성이 없는 자료들에 대하여 여전히 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결론이 당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의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검토할 때, 이용자는 정보공급자인 동시에 정보수요자이다. 현실적으로는 후자의 입장에 서서 법적 보호범위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이 성숙하여 정보공급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시점에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별법적 보호체계의 수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범위를 학문적 연구분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규범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V. 인터넷상[45]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보호

1. 문제의 소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한은 선등록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basis)를 정하고 있는 InterNIC의[46] 원칙에 따라 우선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47] 그러나 상표법상 보호되는 제3자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보호 사이에 법적 충돌이 발생한다. 예컨대, 타인의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이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출원시에 실제 상표권자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되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상표권보다 앞선 경우에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를 문제삼게 됨으로써 상표권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권과 당해 상표를 가지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구할 것이다.[48] 그런데 미국에서 연방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등록 외에 미등록

상표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커먼로상 상표권을 취득랑 수 있다. 이를 NSI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표사용을 통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현행 상표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com, .net 및 .org의 도메인이름의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상표법의 관련내용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49]

이 점을 둘러싼 현재 NSI 분쟁처리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계고장을 발송한 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또는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NSI에 대하여는 계고장과 연방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내용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계고장 도착 후 30일 이내에 소제기한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NSI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되면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유보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을 확정짓는다.[50]

이와 같은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와 NSI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따른 타인의 상표권침해 여부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법원은 우선 가상공간상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과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WIPO에서는 여러 국제회의를 통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51] 아직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 사법적 해결방법:성명권 및 상표권 원용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간의 다툼은 처음에 MTV 사례, Kaplan 사례 및 Hasbro 사례에서[52] 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 화해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었으나, 최근에는 진지하게 규범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거절된 하이델베르크시 사례를 살펴보겠다. 인테넷상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스템회사가 Heidelberg시와 인근지역(Kurpfalz)에 관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계획하여 하이델베르크시와 함께 온라인서비스 및 협력을 제안했으나, 시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시스템회사는 단독으로 "heidelberg.de"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시켜 1996년 2월 부터 인터넷상에서 위의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시는 1995년 12월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heidelberg.de"로써 등록신청했으나 거절되었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인테넷사용자가 하이델베르크시를 접속하려면 하이델베르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므로 시의 명칭은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일 민법상 성명권을 원용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하이델베르크시가 §12 BGB에[53] 규정된 성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인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54] 이 결과로 피고는 현재 "kurpfalz.de"라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도메인분쟁을 상표권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55]

또 다른 사례는 실제 등록된 상표와 같은 제3자의 성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경우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당해 도메인을 넘겨줄 것을 청구한 내용으로 인터넷상의 도메

인분쟁의 전형적인 예이다. 원고는 KRUPP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 러 상표를 등록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등록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그 이유는 피고 W. Erich Krupp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소제기 1년 6개월 전부터 "krupp.de"라는 도메인이름을 이미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보호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거래의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근거로 독일 상표법 제5조와 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지하고, DeNIC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대로 등록하라는 취지로 소제기하였다. 원고가 일반거래에서 식별되는 회사명칭과 이를 가지고 등록된 상표 등의 사회적 인식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자신의 성명을 가지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 역시 민법상 성명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성명의 사용은 영업상 거래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적시하면서 개인의 성명권은 추가적인 보호내용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한, 거래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56]

그 외에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도메인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도메인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용금지에 대한 청구권 및 등록기관인 DeNIC에 대하여 도메인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7]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미국 법원에서 행한 최근의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방향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ACTMEDIA, Inc는 연방 상표법에 따라 오래 전에 ACTMEDIA라는 상표를 등 록하였고, NSI에 "actmedia.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도메인이름은 Active Media, Int'l Inc에 의하여 회사의 도메인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었다. 이에 ATMEDIA사는 도메임이름을 등록한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와 도메인이름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였는데, 원고의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58] 또 다른 예는 INTERMATIC라는 상표를 가진 Intermatic사가 자신의 상표를 가지고 "intermatic.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거절되었다. 실제 intermatic.com은 Toeppen이라는 개인이 등록한 것으로 이 도메인이름 외에 약 240여 개의 다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법원은 상기의 경우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59]

3.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내기업이 .com, .net 등의 최상위 도메인이름(top level domain name)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InterNIC에 등록신청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차상위 도메인이름(xyz.kr)을 관장하는 KrNIC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미국내의 기업들간의 등록과 분쟁해결방법에 따르게 되지만, 상표권에 관하여 현행 상표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섭외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후자에 관하여는 한국전산원이 관장하는 KrNIC의 도메인이름 처리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60] 그러나 이 때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KrNIC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전자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이와

관련된 상표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성명권, 등록상표권자는 상표권, 미등록 저명상표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관련 법리를 원용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Ⅵ. 통신망의 보안성 확보와 지적재산의 보호

이 문제는 통신망의 설치·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개발에 힘입어 강도 높은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적, 기술적 방안모색과 함께 규범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이는 통신망의 보급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요청되는 기본적 사항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거래안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된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61]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에서 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으로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를 천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62] 또한, 금년 7월에 클링턴 행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활성화 방안에서도 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63] 아래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간단히 살펴본 후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검토하겠다.

1. 안전성·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

통신망상 전달되는 정보는 당사자의 의도대로 변질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64] 이러한 내용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보전달에 관계된 전분야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에서 주된 논의대상이 되는 이유는 디지틀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전달될 경우에는 통상의 통신매체에서 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다.

안전성을 잃게 하는 원인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 관리적·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암호코드화(encryption), 인증(authentication), 사용자확인(password) 및 방화벽(firewall) 설치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보내용의 암호코드화작업은 해독키 없이 자료를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확실한 암호화내용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지만, 해독키를 분실하면 그 자료는 영원히 잃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때때로 범죄에 악용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공개키 관리기반(open-key management infrastructure)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인증제도는 사이버공간상의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 관련 전자업무에서 당사자의 신분확인기능, 전자업무 내용의 정보보호 및 무결성기능, 전자행위에 대한 부인봉쇄기능 등 전자업무의 중요 인증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제3자(인증기관)가 확인 및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 각국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전자상거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인증제도 관련 법률로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있다.[65]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인증의 책임기관인 인증기관의 자격, 역할 및 법적 책임, 인증절차 및 인증방법 등이다.[66] 전자인증제도와 관련한 정보보호기술의 실체화가 바로 초고속인증망구축이다. 초고속인증망이란 전자인증의 책임기관인 인증기관들을 서로 통신망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로, 전자인증를 위한 네

트워크다.[67]

사용자확인은 권한 없는 내부자의 불법적 정보접근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패스워드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작업현장에서 유용한 방법인 반면, 방화벽설치는 외부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2. 규범적 방안모색[68]

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란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안전성을 저해하고 신뢰성을 깨뜨리는 제요소를 제거하거나 사전에 문제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집행을 말한다. 정보란 그 내용에 따라 특별법상 보호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법상의 보호가치 있는 대상에 속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보유자는 현재 저작권법상 편집저작권자가 아닐지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침해에 따른 사법상 불법행위법리에 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규범적 측면의 방안모색은 간단히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하나는 통신망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다른 하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를 전보케 하는 방법이다.

(1) 형법적 접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법률개정으로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다.[69] 또한, 1996년 7월 1일 부터 기존의 특별법상 규제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전산망이용과 관련된 신종의 법죄유형을 형법전에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 전자기록의 위작·변작 및 행사 등 컴퓨터관련 범죄가 신설되었다(제140조 제2항·3항, 제232조의 2, 제227조의 2, 제314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47조의 2). 또한 재물손괴죄 등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다(제48조 제3항, 제141조, 제228조, 제229조, 제336조 등).

(2) 사법적 접근

우선 먼저 사법상의 구제방안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가치있는 대상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 사안을 유형화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전산망과 관련된 민사책임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치마련과 함께 책임론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현행 사법체계는 산업화사회의 규범적 기초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정보화사회의 책임론은 디지틀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인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계획에서 전자상거래를 인터넷활용의 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와 관련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 인터넷을 주된 서비스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제

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 중 디지틀 계약을 다루기 위한 통일상법전(UCC)의 개정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상 거래는 국제거래의 일반적인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이를 규율할 체계적인 거래법이 요청된다.[70] 이에는 전자적 계약, 인증절차,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전자거래상 책임문제 등이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거래는 주로 매매와 라이센스계약이 될 것이므로[71]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모조품의 거래를 막고, 진품거래를 보호하려면, 분명하고 효과적인 저작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보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밖에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의 구성원이 정보유출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패스웨드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 또는 know-how 등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Ⅶ. 결 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통신기술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 의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등장하면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체계 내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공간 및 정보고속도로와 관련된 법체계의 논의는 이제까지의 환경변화와 다른 미증유의 사실로 부터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화관련 기술의 선도적 위치를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연구결과는 규범적인 접근에서도 멀찌감치 앞서 가고 있다. 특히 NII 보고서와 전자상거래의 운용계획안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사회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즉응하는 법·제도가 이를 지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는 과학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북돋기 위한 긍정적 측면 보다는 이의 이용에 따른 폐단을 막는다는 구실로 규제중심의 규정을 두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기반에서는 통신망의 접속을 원활히 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부터 통신망구축에 따른 호환성의 확보와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안, 도메인이름과 상표권보호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틀 속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통신망의 이용촉진을 끌어내어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전망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된 통신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수준의 향상과 함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의 누출, 불법적 통신망의 접근 등의 방법으로 통신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살펴볼 때, 이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의 응용서비스로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전반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통신망 자체의 보안성확보와 규범적 해결방안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은 이것 자체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술분야와 법학분야

의 학제간의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적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상호 학문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기술적 내용의 파악과 함께 이와 관련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이런 점은 기술분야에서의 규범적 접근과 법적인 안목에서 기술적 사항을 면밀하게 고려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적정한 규범적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Eugene Volokh,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Law", 47 Stan. L. Rev. 1375, 1398 (1995)

[2] M. Ethan Katsh, Law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5호.

[4] 이러한 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논의는 망 자체의 설치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연동성에 관하여 살펴보게 된다.

[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계획, 1997. 7. 28일(수정 확정): 한국전산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 179쪽 이하.

[6] 각 단계별 구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 o 제 1단계('95-'97년) :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기반구축
- o 제 2단계('98-2002년) :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확산
  - 제공 서비스: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전자민원서비스, 전자도서관, 지리정보시스템(GIS)
  - 기간전송망: 2.5Gbps급 광케이블 구축, 초고속교환기(ATM) 구축
- o 제 3단계(2003-2010) :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완성
  - 제공서비스: 입체 영상회의와 분산 DB의 병렬검색, 슈퍼컴퓨터간 병렬처리 전송 등
  - 기간전송망: 수십 Gbps급 광케이블 구축, ATM교환망 구축

[7]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의 목표연도는 처음에 2015년으로 정했으나, 5년 앞당겨 2010년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하고, 전가정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던 계획도 그 범위를 25% 내외로 축소하여 구리케이블과 무선망을 혼용하기로 조정되었다(1997. 7. 29일자 전자신문 기사).
정보통신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이 대부분 20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45조원의 투자액도 31조 7천억원으로 축소조정하였다.

[8] Douglas W. Schoenberger,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in the NII: The Infrastructure's Infrastructure", Standards Policy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MIT Press, 601, 603 (1995).

[9] 이는 본래 두 개의 구성요소, 기능단위가 가지는 경계·접촉면 또는 공유영역을 말한다.

[10] T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의 약어.

[11] 프로그램언어(예컨대, cobol, assembly, c 등), 프로그램 규약, Algorithm 등은 보호대상에 들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12] Jongen and Meijboom, Copyright Software Protection in the EC, Kluwer, 16 (1993).

[13] IIT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llectual Prpperty Rights (hereinafter White Papers), Sep/1995, 〈http://www.uspto.gov/web/offices/com/doc/ipnii〉; Americam Committee for Interoperable Systems(ACIS), Com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t 2-4 (Sep/1994).

[14] Anne W. Branscomb, Who Owns Information ?: from Privacy to Access, Harper Collins, 152, (1994).

[15] 이러한 점에서 분해는 특허, know-how 등에서 언급하는 역공정(reverse engineering)과 구별되지만, 프로그램이나 기술내용을 역으로 해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낸다는 점에서 두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16] Article 6 (1) of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shall not be required · · · to achieve the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ith other program,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se acts are performed by the liensee or by another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program, or on their behalf by a person authorized to do so;

(b)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achieve interoperability has not previously been readily available to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c) these acts are confined to the parts of the original program which are necessary to achieve interoperability".

[17] Article 6 (2) of EC Computer Directive.

[18] 975 F. 2d 832 (Fed. Cir. 1992)

[19] 977 F. 2d 1510 (9th Cir. 1992).

[20] NII White Paper, supra note 13, 199.

[21] Charles R. McManis, "Taking TRIP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merging Computer Technology", 41 Vill. L. Rev. 207, 239 et seq. (1996).

[2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7 USCA 107)는 ① 저작권의 이용이 영리적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지에 대한 판단(purpose of use), ②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성격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③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된 부분과 중요성 여부(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④ 저작권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성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effect on the market)의 공정이용에 관한 네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23] 977 F.2d 1510, 1526 (9th Cir. 1993).

[24] 저작권은 표현(expression)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특허권은 고안(idea)를 대상으로 한다(idea/expression dichotomy).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능적 측면과 고안은 특허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25]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일본이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 목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한 역공정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에 거센 항의를 한 적이 있다. ("Cyberlex", 13 PC Report no.2, 22(Feb/1994)).

[26] 이에 관하여 Brian Kahin and Janet Abbate, Standards Policy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MIT Press, 1995 참조.

[27]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전산망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21호, 1996. 3. 18일 제정); 정보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29호, 1997. 5. 24일 고시).

[28]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지침(정통부 고시 제1995-129호) 제4조, 제5조 1항.

[29] 이기수 외7인 공저,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타, 1162쪽 이하.

[30]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산의 보호대상의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에 비추어 볼때 프로그램의 분해를 현행 프로그램 보호법상 명문규정으로써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분해는 주로 프로그램 내용의 고안을 알아내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 이러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쉽게 검색 또는 입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 개발된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즉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축적된 자료를 가공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면 따로 정리할 필요없이 자동 추가되며 고속검색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DBMS는 보호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독일 저작권법 제4조 2항 후단; EU Database 지침 제1조 3항 등).

[32] Richard D. Marks, "Current High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itiatives", 34 Jurimetrics 126, 127 (1993).

[33] "· · · database shall mean a collection of independent works, data or other materials arranged in a systematic or methodical way and individually accessible by electronic or other means".

[34] A "compilation" is a work formed by the collection and assembling of preexisting materiala or of data that are selected, coordinated, or arranged in such a way that the resulting work as a whole constitutes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The term "compilation" includes collective works.

[35]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달리 일반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구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데이터베이스라 함은 "논문, 수치, 도형 기타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이들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0호의 3)).

[36] 독일 저작권법 4 Abs.2 (1997.8. 1일 시행).

[37]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38] ProCD v. Zeidenberg, 39 USPQ 2d 1161 (7th Cir. 1996).

[39] 이 판결에 관하여 Howard B. Abrams, "Originality and Creavity in Copyright Law", 55 Law & Contemp. Probs. 3 (1992); Jane C. Ginsburg, "『No Sweat?』, Copyright and other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After Feist v. Rural Telephone", 92 Colum L. Rev 338 (1992); Robert A. Gorman, "The Feist Case: Reflections on a Pathbreaking Copyright Decision" 18 Rutgers Computer & Tech. L. J. 731 (1992) 참조.

[40] "예컨대, 전화번호부, 편집저작물 경우에 있어서 독창성은 제작에 쏟은 노동력에 의존하였다"(Arthur R. Miller & Michael H. Davis, Intellectual Property(2d ed.), West, 295, 1990)는 記述內容은 Feist 판결 이후에 더 이상 논의가치가 없게 되었다.

[41] Marshall A.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Matthew Bender, 41 (1995); Paul J. Herold, "The Vice of Originalty", 1991 Sup. Ct. Rev. 143, 168-177.

[42] 대법원 1993. 6. 8, 92 도 2963 판결; 동 1992. 9. 25 92 569 판결.

[43] 대법원 1993. 1. 21, 92 마 1081 결정.

[44] Leaffer, supra note 41, 54-55.

[45] 인터넷이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여러 네트워크간 연동성을 보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는 전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미국방성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대학, 연구기관 및 군사기관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구축한 ARPAnet(1969)에서 학술·연구목적의 비영리 네트워크로서 1983년 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 세계의 수천만 명이 정보획득을 위한 접속과 상호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신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89년에는 90,000여 호스트가 정보전달 및 통신에 이용되었지만, 1996년에는 9,400,000의 호스트가 연결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호스트의 60%가 미국에 있고, 전세계 인구 중 약 4,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아마 2,000년에 약 2억명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기관, 회사 및 공공도서관에서 그 이용을 위한 접속방법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 커피숍 등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상업용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ACLU v. Reno, US. Supreme Court No 96-511 (June 26. 1997)).
국내에서는 1991년 국내 학술관련 전산망을 중심으로 학술전산망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넷스케이프와 모자익 등의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1994년 부터 WWW서비스를 본 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상용서비스가 일반화되었다.

[46] NSI(Network Solution Inc.)는 미국 국가과학재단(NSF)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최상위도메인 이름(TLD)의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InterNIC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은 현재 AT&T의 관리하에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서비스(Directory and Databases Services)를 제공하고 있으며, NSI의 관리하에 등록사무(Registration Services)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http://www.netsol.com/〉, 〈http://www.internic.net/〉참조.

[47]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자세히는 Robert Shaw, "Internet Domain Names: Whoes Domain Is This?", Workshop Papers at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vard University, Sep. 9-10, 1996, 〈http://www.itu.ch/intreg/dns.html〉참조.

[48] Network Solutions Domain Name Dispute Policy (Rev 02) Guidelines Section 6 (1996. 9. 9 시행),〈ftp://rs.internic.net/policy/internic/internic-domain-6.txt〉.

[49] 국내업체와 관계된 도메인 이름의 분쟁사례로서 nextel.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internet 전문업체는 미국의 nexte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가진 업체와의 사용권 분쟁이 있었는데, 만약 도메인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상표권침해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제기하겠다고 밝혔다(중앙 일보 96. 10 19일자 "『먼저 등록하면 임자』공식 깨져"). 이에 국내 nextel사 uriel.net로 도메 인 이름을 바꾸

었다. 인터넷상〈http://www.tabnet.com/lookup.sh〉을 통하여 nextel.com과 nextel.net를 색인하면 후자 nextel.net는 사용중지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배대헌, "가상공간(cyberspace)과 지적재산권", 창작과 권리 제6호, 105쪽 이하, 1997/3월).

[50] Network Solutions' Domain Dispute Policy(Rev 02), 1996년 9월 9일 시행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ftp://rs.internic.net/policy/internic-domain-6.txt〉참조.

[51] 이에 관하여 WIPO "Meeting of Consultants on Trademarks and Internet Domain Names", Dec/1996, 〈http://www.wipo.int/eng/internet/domains/tdnmcil.htm〉.

[52] MTV v. Curry 사례에서 Adam Curry는 MTV(음악전용유선방송) 비디오자키로서 인터넷에 mtv.com이라는 이름의 web site를 통하여 록음악계에 관한 내용을 매일 제공하였다. 그러나 MTV는 비디오자키와 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래 사용하던 도메인 이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MTV는 이 비디오작키가 계속해서 인터넷 상의 site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MTV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양당사자는 화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MTV사는 위 mtv.com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867 F.Supp. 202 (S.D.N.Y. 1994)).
Kaplan v. Princeton Review 사례에서 프린스턴 리뷰는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을"kaplan.com"으로 등록하여 학생들에게 직업관련 시험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도메인이름에 사용된 'kaplan' 명칭은 원고인 Kaplan Educational Centers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다. 이에 원고는 프린스턴 리뷰사에 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을 넘기기로 하여 종결되었다(94 CV 1604 (S.D.N.Y. 1994)).
Hasbro, Inc.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Ltd. 사례에서 법원은 아동용 게임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던 원고의 candyland라는 명칭을 성인오락 내용의 전송을 위한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피고에 대하여 "candyland.com"의 도메인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이름을 등록할 것을 판시하였다(1996 U.S. Dist. LEXIS 11626, 1996 WL 84853 (W.D. Wash. Feb. 9, 1996)).

[53] 독일 민법 제12조, "어떤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하여 타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투거나 또는 타인이 권한 없이 동일한 성명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54] LG Mannheim Az. 7 O 60/96(Urteil v. 9. 3. 96).

[55] "인터넷 주소 한개가 37만5천달러(약 3억원). 최근 인터넷에서 한 미국인이 국인이「losangelescity.com」이라는 도메인을 팔겠다면서 부른 값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를 의미하는 이 도메인은 로스앤젤레스시나 시와 관련된 단체등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같은 주소이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산하 도메인 등록, 관리기관인 인터닉에 불과 등록비 1백달러와 연간 관리비 50달를 내고 이 주소를등록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돈의 무려 2천5백배나 되는 값에 주소를 팔겠다는 것이었다"(1996. 11. 14일자 중앙일보). 여기에서 LA시가 독일판결에 좇아 위의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56] LG Bochum 14 O 33/97 (Urteil 24. 4. 97). 이에 관하여 Weinknecht, "Gutachten zu dem Urteil des LG Bochum vom 24. April 1997 - 『krupp.de』", 〈 http://www.weinknecht.de/krupp__g.htm〉참조.

[57] LG D sseldorf 34 O 191/96 (Urteil 4. April 1997).

[58] Actmedia, Inc. v. Active Media Int'l Inc., 1996 WL 466527 (N.D.Ill., Jul 17,1996).

[59] Intermatic Inc. v. Toeppen, 40 USPQ 2d 1412 (N.D.Ill. Oct. 3.1996).

[60] 이에 관하여 〈ftp://ftp.krnic.net/docs/KRNIC-012.txt〉참조.

[61] 97년 7월 1일에 클링턴행정부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 인터넷을 주된 서비스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 인터넷상 거래를 사적 영역에서 유도하도록 하며, ii) 정부는 부당한 규제를 배제하며, iii)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며, 법적 환경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iv) 인터넷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v) 전자상거래가 세계적 터전을 잡아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확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안성: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내용 및 데이터의 전송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② 통신기반과 정보기술: 인터넷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미국은 경쟁체제도입, 소비자 선택권, 저렴한 이용료 및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③ 정보내용(content): 부절적한 정보내용의 전달을 막는 방법을 강구한다. 코텐트 등급제, 프로그램의 여과(filtering) 및 기술적 봉쇄방법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내용을 통제한다. ④ 기술적 표준: 급격하게 변하는 저간의 사정에서 인터넷상 연동성을 위하여 정부는 기술적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6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13조, 14조, 15조, 16조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제고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14조, 14조의2, 22조, 25조, 29조 이하).

[63]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http://www.iitf.nist.gov/elecomm/ecomm.htm〉참조.

[64] 여기에서 안전성은 안정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안전성의 안정성(stability)은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전송 및 교환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65] 독일의 경우에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Beschl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13. Juni 1997 (BT-Drs. 13/7934 vom 11.06.1997), 1997. 8. 1. 시행.

[66]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자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내에 적합한 전자인증제도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통상산업부는 가칭 '전자상거래법'을 마련중에 있다.

[67] 박성준. "전자상거래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 심포지엄 97 주제발표내용. 전자신문 1997. 6. 24일자.

[68]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안전성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6/12 참조.

[69] 법 제22조-25조, 제29조 이하 참조.

[70] 미국의 UCC 개정논의와 UN의 통상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마련된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규정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규율할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전자적 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전자거래상 채무이행, 전자서명 및 분쟁해결을 위한 컴퓨터증거의 입증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현재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a Act)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관하여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ecicta/ect897.htm〉참조.

[71] 이에 관한 UCC 개정(라이센스계약 신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센스 계약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허 등의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UCC 2b-103 d (2)). 여기에서 거래라 함은 라이센스계약,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예컨대, access contract: click on license), 스프트웨어계약 및 정보를 관리하는 계약 내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cc2/ucc2b797.htm〉참조.

□ 著者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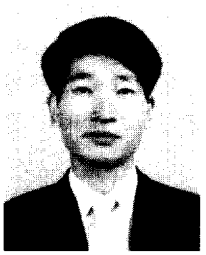

배 대 헌

1985년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1996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1994년 ~ 1995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1996년 ~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주관심분야: 민법 · 지적재산권법(정보통신관련 법률문제)